

# 농가 자율에 의한 축산업 등록제가 되어야

지금까지 우리 낙농인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최근 원유과 임생산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생산제한을 받아왔으며, 초과원유에 대해서 일반 유업체는 반값인 310원을 또한 정부정책에 따라간 낙농진흥회 낙농가들은 이보다 훨씬 불리한 53원을 준다고 농림부가 발표한 상황에 이르러 진흥회에 우유를 납유하는 낙농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지역별 집회와 집유를 거부하고 눈물과도 같은 우유를 길거리에 쏟아 붓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런 어려운 낙농현실 앞에 축산업등록제는 더 이상의 낙농업을 하고 싶은 의욕마저도 상실케 한다. 축산업등록제를 법정규정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낙농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낙농가의 의견일 것이다. 이번 축산업등록제 도입은 농장단위의 질병예방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고 농가의 방역 및 안정성 수준을 높이고 등록을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업장 정문 및 축사, 사료창고, 소독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의 방류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운동장은 높은 운동장에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를 설치해야 하며, 배수된 높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젖소 두당 초기가 1,200제곱미터, 논 1,200제곱미터, 사료는 650제곱미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등록기준이 적합하게 설치될 경우 시장·군수는 현장 실사를 거친 후 목장고유번호와 등록증을



박순식  
본회 이사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낙농업을 하는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도 이러한 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오분법 등에서 규제되어 있는데 벌칙조항 등을 더 강화하는 규제일변도의 축산업등록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축산업등록제의 시행목적이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정성 제고라 하는데 최근 발생되는 O-157 구제역 등의 질병 대부분이 외국 축산물의 불법유통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생산자의 규제보다 정부가 외국축산물을 수입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축산업등록제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조사료 확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친환경적불제 등의 혜택 항목도 친환경적불제와 연계되어야 하며, 규제가 아닌 농가 자율에 의한 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